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



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4. 12. 31.] [관세청고시 제2024-72호, 2024. 12. 23., 일부개정]

관세청(자유무역협정집행과), 042-481-7968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원산지확인"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(이하 "협정"이라 한다)과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「관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증명서발급기관"이란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한다)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.
- 3. "생산자"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.
- 4. "원산지조사"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·조약,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,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,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.
- 5. "지정 정보통신망"이란 관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customs.go.kr) 또는 관세청 FTA포털 (http://www.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)을 말한다.
- 6. "소액물품"이란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 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(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)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을 말한다.
- 7. "원산지소명서"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·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, 주요 생산공정,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.
- 8. "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"이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,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

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

- **제4조(적용대상)**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(이하 "적용수량"이라 한다)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
 - 2.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
 -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「관세법」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(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)한 물품으로 한다.
- 제5조(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)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: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
 - 2.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: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
 - 3. 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: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
 -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제6조(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)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.
- 제7조(잔여수량의 게시)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품목별 적용수량
 - 2. 품목별 배정수량
 - 3. 품목별 남은 적용수량
 -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절 특정물품의 원산지확인

- 제8조(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)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수 있다.
 - 1.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(B/L) 등 운송서류 일체

- 2.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
- 3.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
- 4.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
-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)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, 곡물 등 액체화물(이하 "액체화물 등"이라 한다)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. 다만,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.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.
 -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

- 제10조(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)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
 - 2. 「관세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(이하 "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.
 - 1. 원산지증명서(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)
-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
- 3 국제운송 관련 서류
- 4 원가계산서・원재료내역서・공정명세서(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)
- 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・생산 관련 증빙서류(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)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제출은「관세법」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(이하 "전자신고등"이라 한다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④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1조(신청서류 확인)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1.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
 - 2.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
 - 3.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
 - 4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
 - 5.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12조(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)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
 - 2.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
 - 3.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
 - 4. 물품의 특성,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
 - 5.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 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서류제출 변경 요구
 - 2.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
 - 3. 보완기간(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)
 - 4.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
 -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체 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 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④ 수입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 -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.
 - ⑦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3조(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)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.
 - 1. 오・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
 - 2.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,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14조(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)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.
 - 1. 수입신고서 19번('원산지증명서 여부')란에 'X' 표시
 - 2. 수입신고서 46번('원산지')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
 - 3. 수입신고서 50번('세율')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
- 제15조(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)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1. 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2.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
 - ②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'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'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- 1. 하나의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
 - 2.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
- 제16조(동종·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)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 2의 동종·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 - 1.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
 - 2.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
 - 3.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
 - ③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, 제출, 수입신고의 수리,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
- 제17조(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) ① 세관장은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 - 1. 제11조 각 호의 사항

- 2.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
- 3.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
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충족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③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사실 통보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-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 및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38조를 준용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.
- ⑤ 통관부서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할수 있다. 다만,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통관부서장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.
- ⑥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친 경우 법 제17조제6항 등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통관부서장에게도 함께 통지한다.
- 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7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은 「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심사한다.
- 제17조의2(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·해제) ①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물품을 말한다.
 - 1. 적용대상 협정 또는 원산지에 따른 협정관세율과「관세법」제50조에 따른 세율간 차이가 큰 물품
 - 2. 수입 상대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많은 물품
 - 3.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
 - 4.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위반 등에 따른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물품
 - ②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을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적용대상 협정·원산지·품목번호·품명(단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품목번호와 품명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)
 - 2. 협정관세 사전심사 적용 기간
 - ③ 관세청장은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있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4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

- 제18조(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)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
 - 1.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
 - 2. 원산지증명서(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 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)
 - 3.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・납세신고정정신청서
 - 4.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(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-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.
 -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- **제19조(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)** ① 수입자가 제18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 - 1. 제11조 각 호의 사항
 - 2.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. 다만,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인지 여부
 - 3.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
 - 4.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(작성방법을 포함한다)과 일치하는지 여부
 - 5.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
 -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산지증 빙서류의 제출요구, 제출, 수입신고의 수리,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 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
 -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0조(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) 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.

제3장 원산지증명 제1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

- 제21조(원산지증명서 신청인)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협정에서 정하는 자
 - 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http://unipass.customs.go.kr)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 지증명센터(http://cert.korcham.net)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
 -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, 관세법인 또는 「관세사법」제19조제 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.
- **제22조(증명서발급기관)**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(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)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22조에 따른 세관
 - 2.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(이하 "대한상공회의소등"이라 한다)
 - ② 증명서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, 대한상공회의소등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.
- 제23조(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)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
 - 2.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(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)
 - 3.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
 - 4.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
- 제24조(반려 및 조사의뢰 등)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
 - 1.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
 - 2.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- 3.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관 이외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범칙조사의뢰를 요청한다.
- 제25조(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)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(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)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.
- 1.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: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하거나 발급
- 2.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: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 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
- 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.
- 제26조(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)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<삭 제>
 - ③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의 "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·정보 "(이하 "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"라 한다)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
 - 1.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 출국이 동일한 경우
 - 2.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
 - 3.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(Reference No)를 제출하는 경우
 -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
 - 1.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,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: 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
 - 2. 제5항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: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 괄확인서
 - ⑤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별표 2의2와 같다.
 - ⑥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.("전자문서 방식"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)
 - 1.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: 「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 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
 - 2. 대한상공회의소등에 발급신청하는 경우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「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」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⑦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따라 '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'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보세구역 반입신고서
- 2.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신고서
-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
- ⑧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서 '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'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1. 수입한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: 해당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서류 사본 등 입증서류
- 2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: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서류
- 3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: 협정 제2장 제2.6조(관세 차별)에 따른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, 제조공정도,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입증서류

제27조(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) ①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.

- 1.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(예: 원료구입명세서, 자재명세서(BOM), 생산공정명 세서, 사용자매뉴얼, 홍보책자 등)
- 2.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,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(예: 자재명세서 (BOM), 원료구입명세서, 원료수불부, 원가산출내역서 등)
- 3.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(포괄)확인서
- 4.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(포괄)확인서
- 5.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・생산장소・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
-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(BOM)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.
- 제28조(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)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.
 - 1. 규칙 별지 제10호서식(싱가포르와의 협정): 15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2. 규칙 별지 제12호서식(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): 12번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3. 규칙 별지 제14호서식(인도와의 협정): 제6란(Remarks)에 날인
 - 4. 규칙 별지 제22호서식(베트남과의 협정): 12번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5. 규칙 별지 제24호서식(중국과의 협정): 제5란(Remarks)에 날인
 - 6.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(인도네시아와의 협정): 제4란(Remarks)에 날인
 - 7. 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(이스라엘과의 협정): 제7란(Observations)에 날인
 - 8.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(캄보디아와의 협정): 13번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9. 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(필리핀과의 협정): 12번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.
 - 1.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: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(선적일을 포함한다)에 발급하는 경우
 - 2. 인도와의 협정: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

- 3. 베트남과의 협정: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
- 4. 중국과의 협정: 선적일 후 7근무일(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
- 5. 인도네시아와의 협정: 선적일로부터 7일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
- 6. 이스라엘과의 협정: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(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)에 발급하는 경우
- 7. 캄보디아와의 협정: 선적일로부터 7일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
- 8. 필리핀과의 협정: 선적일부터 3근무일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
-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의 문구를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.

제29조(현지확인)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칙 제 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.

- 1.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
- 2.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
- 3. 확인대상 내용
- 4.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
-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기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연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세관장은 현지확인 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「행정조사기본법」제11조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, 제22조를 따른다.

제30조(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)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'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'의 대상선 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%를 초과하는 자. 이 경우 '오류 등의 비율'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.
- 2.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
 - 가. 법 제44조, 제45조
 - 나. 「관세법」제268조의2, 제269조, 제270조, 제270조의2, 제276조
- 3.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, 제조공정(예: 단순 가공 공정) 및 물품의 특성(예: 부가가치기 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)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 신청인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
- 2.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
- 제31조(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)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(규칙 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)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(보고)하여야 한다.

제32조(신청서류 심사)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
- 1.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
- 2.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
- 3.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
- 4.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
- 5.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 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- 1.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
- 2.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(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)
- 3. 법규준수도 우수업체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 AA등급 이상
- 4.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'이상 없음'으로 확인된 업체
-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. 다만,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.
- **제33조(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)**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 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.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.
- 1. 인도와의 협정: 원본 1부와 부본 2부
- 2. 그 밖의 협정: 원본 1부와 부본 1부
-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본 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원산지증명서 재발급) ① 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(재발급·정정발급)신청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. 다만, 인도와의 협정에 한하여 협정 제4.4.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함께 제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.
 -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.
 - 1. 규칙 별지 제10호서식(싱가포르와의 협정): 15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2. 규칙 별지 제12호서식(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): 12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3. 규칙 별지 제14호서식(인도와의 협정): 제6란(Remarks)에 날인
 - 4. 규칙 별지 제22호서식(베트남과의 협정): 12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5. 규칙 별지 제24호서식(중국과의 협정): 제5란(Remarks)에 날인하고 "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(발행번호) dated(날짜)"를 추가로 기재
 - 6.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(인도네시아와의 협정): 제4란(Remarks)에 날인하고,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
 - 7. 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(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): 제14란(Remarks)에 날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일자를 추가로 기재
 - 8.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(캄보디아와의 협정): 13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9. 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(필리핀과의 협정): 제12란(Certification)에 날인
 -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"진정등본(CERTIFIED TRUE COPY)" 문구를 제3항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.
- 제35조(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)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,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, 수량, 품목번호 등의 착오, 누락,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자가 그 정정발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- 1.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(재발급・정정발급)신청서

- 2.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.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
- 3.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
- ②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.
-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.
- 1. 아세안회원국, 인도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, 캄보디아, 필리핀과의 협정: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,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
- 2. 그 밖의 협정: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,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
- 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.
- 1.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
- 2. 베트남과의 협정
- 3. 인도네시아와의 협정
- 4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
- 5. 캄보디아와의 협정
- 6. 필리핀과의 협정
- 제36조(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)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(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)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
- 제37조(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)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 문서를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.
- 제38조(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)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FTA 법령에 관한 사항
- 2.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
- 3.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
- 4.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
- 5.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.

제39조 (원산지(포괄)확인서 작성대장)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작성번호 및 작성일
- 2. 품명·품목번호·수량 및 단위
- 3. 원산지·원산지결정기준
- 4.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
- 5. 원산지 포괄확인기간
- 6. 자유무역협정
- ②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·관리할 수 있으며,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0조 (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) 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(포괄)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- 1. 원산지(포괄)확인서
- 2. 원산지(포괄)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
-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.
- 1.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
- 2. 원산지(포괄)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
-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④ 세관장은 원산지(포괄)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· 거소·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원산지(포괄)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

- 제41조(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)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·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·부서명·직책·성명·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.
- **제42조(원산지 자율증명 절차)** 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・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・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생산자(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·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
 - 1. 규칙 제12조제1항의 원산지(포괄)확인서
 - 2.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(포괄)확인서
 - 3.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
- 제43조(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)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ㆍ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-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. 다만,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ㆍ생산장소ㆍ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3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

- 제44조(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)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(또는 담당부서)에게 보고 (통보)하여야 한다.
 -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4절 원산지관리사

제45조(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)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「자격기본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점심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「전자정부법」

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- 1. 법인등기부 등본
- 2. 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3. 자격시험 시행계획서
-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4장 원산지조사

- **제46조(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)**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.
 - 1.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·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:「관세법」제49조에 따른 세율(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)을 적용
 - 2.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・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: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

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

제47조(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)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(이하 "사전심사부서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영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: 관세청 원산지검증과
- 2.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: 관세청 세원심사과
- 3.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: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
- 4. 영 제37조제1항제5호: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
- 5. 그 밖의 사항: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
-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, 우편, 전자메일(E-Mail)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 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.

제48조(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) 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1.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
- 2.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
- 3. 신청주체,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
- 4.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- 5.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
-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49조(신청서류의 보정) 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보정할 사항
 - 2. 보정요구 사유
 - 3. 보정기간
 -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-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.
- **제50조(신청서류의 반려)**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 - 1. 수입신고 후에 사전심사가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
 - 2.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협정에 대해 신청한 경우
 - 3.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
 - 4. 제49조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5.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
 - 6.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- 7.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

제51조 <삭 제>

제52조(사전심사 결과통지)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

-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.
- 제53조(사전심사서의 효력)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'물품의 내용'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

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

사서와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.

제54조(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) 영 제38조에 따른 이의제기서와 첨부서류는 서면, 우편 또는 전자메일(E-Mail)로 제출할 수 있다.

제55조(사전심사 내용의 변경)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.

-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- ③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,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(통보)하여야 한다.
- 1.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
- 2.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
- 3. 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
- **제56조(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)**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(신청)서는 별지 제17호서 식과 같다.
 -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

제57조 <삭 제>

- 제58조(적용제한자 지정 해제)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 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, 우편 또는 전자메일(E-Mail)로 제출할 수 있다.
 - 1. 원산지소명서(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)
 - 2.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
 - 3.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
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제59조(비밀취급자료 지정)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.

- 제60조(범칙조사의뢰)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제45조나 「관세법」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.
 - 1. 범칙행위자의 확인서
 - 2.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
 - 3.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,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**제61조(통지방법)**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(E-Mail) 또는 팩스로 하여야 한다.
- **제62조(준용규정)**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,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및 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- 제63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 <제2024-72호,2024.12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필리핀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